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乙의 허락 없이 마치 乙인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대금은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그에 따라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A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1. 甲은 위와 같이 乙의 명의를 모용해 A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B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 甲이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가 형법상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그 피해자는 누구인지 논하시오.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0점)
2. 甲은 위와 같이 乙의 명의를 모용해 A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丙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甲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형법상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그 피해자는 누구인지 논하시오.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0점)

- 계 속 -

【문 2】

甲은 2019. 8. 1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乙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乙은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여 甲의 차량을 따라잡은 후 순찰차에서 내려 甲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乙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乙의 오른쪽 무릎을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乙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별법 위반죄는 논외로 하고, 다툼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5점)

【문 3】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은 2019. 7. 10. 아파트 관리소장인 乙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하여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乙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자, 다시 乙에게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였다. 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甲과 乙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5점)